

고 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-105호

**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사업시행인가 고시**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99호(2005.12.15.),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6-68호(2016.7.14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잠실아파트지구(잠실3지구) 송파구 신천동 17-6번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,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사항 중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고시·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2.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재생과(☎02-2147-2896)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☎02-413-0395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8월 3일

송 파 구 청 장

1. **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** :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**정비구역의 위치**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-6
3. **정비구역의 면적** : 75,684.5㎡
4. **사업시행자** :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(조합장 김규식)
5. **주된 사무소의 소재지**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-6
6. **정비사업의 시행기간**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7. **사업시행인가일** : 2017. 7. 28.
8. **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** :
별첨

9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구 분	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최고높이(m)	연면적(㎡)	층 수	용 도
주택용지	63,541	17.09	299.70	110.80	285,934.81	지하2층/지상35층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주구중심	4,369	49.99	240.26	23.10	18,069.10	지하2층/지상5층	

10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주택형태	공급구분	동 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
공동주택	계	14	1,888	60㎡미만	60㎡이상~85㎡이하	85㎡초과
	분 양	14	1,700	720	858	122
	임 대		188	188		

11. 정비기반시설(도시계획시설)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종 류	규 모(㎡)	시 행 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도 로	4,130.5	조 합	시행자, 설치비용(무상귀속)
공 원	3,644.0	조 합	시행자, 설치비용(무상귀속)

12. 의제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9호, 제15호, 제17호